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방안에 관한
조사, 2009
CODE BOOK

자료번호	A1-2009-0110
연구책임자	정진수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년도	2009년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3년
코드북 제작년도	2013년

이 자료를 연구 및 저작에 이용, 참고 및 인용할 경우에는 KOSSDA의 자료인용표준서식에 준하여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료 출처는 자료명이 최초로 언급되는 부분이나 참고문헌 목록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이용, 참고, 인용할 경우 표준서식

정진수. 2009.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방안에 관한 조사, 2009」.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3년. 자료번호: A1-2009-0110.

■ 코드북을 인용할 경우 표준서식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3.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방안에 관한 조사, 2009 CODE BOOK」. pp. 1-26.

이 자료의 코드북에 대한 모든 권한은 KOSSDA에 있으며 KOSSDA의 사전허가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할 수 없습니다.

area 조사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광주교도소		20	7.5	7.5
광주보호관찰		21	7.9	7.9
교수		49	18.5	18.5
교정직 공무원		1	0.4	0.4
대구교도소		20	7.5	7.5
대구보호관찰		21	7.9	7.9
대전교도소		18	6.8	6.8
대전보호관찰소		20	7.5	7.5
부산교도소		20	7.5	7.5
부산보호관찰		20	7.5	7.5
서울보호관찰		23	8.7	8.7
안양교도소		21	7.9	7.9
전주보호관찰		11	4.2	4.2
		265	100.0	100.0

aq1 응답자 연령

QA-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나이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만 29세	29	1	0.4	0.4
만 30세	30	1	0.4	0.4
만 31세	31	2	0.8	0.8
만 32세	32	1	0.4	0.4
만 33세	33	3	1.1	1.1
만 34세	34	4	1.5	1.5
만 35세	35	13	4.9	4.9
만 36세	36	7	2.6	2.7
만 37세	37	12	4.5	4.5
만 38세	38	10	3.8	3.8
만 39세	39	5	1.9	1.9
만 40세	40	12	4.5	4.5
만 41세	41	12	4.5	4.5
만 42세	42	14	5.3	5.3
만 43세	43	15	5.7	5.7
만 44세	44	14	5.3	5.3
만 45세	45	24	9.1	9.1

만 46세	46	12	4.5	4.5
만 47세	47	16	6.0	6.1
만 48세	48	12	4.5	4.5
만 49세	49	8	3.0	3.0
만 50세	50	6	2.3	2.3
만 51세	51	6	2.3	2.3
만 52세	52	4	1.5	1.5
만 53세	53	20	7.5	7.6
만 54세	54	6	2.3	2.3
만 55세	55	6	2.3	2.3
만 56세	56	9	3.4	3.4
만 57세	57	6	2.3	2.3
만 59세	59	1	0.4	0.4
만 61세	61	1	0.4	0.4
만 63세	63	1	0.4	0.4
무응답	888	1	0.4	
		265	100.0	100.0

aq2 응답자 성별

A-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성	1	244	92.1	92.1
여성	2	21	7.9	7.9
		265	100.0	100.0

aq3 소속부처 재직기간

A-3. 귀하의 소속부처 재직기간은?

	값
유효합계	264
최소값	1
최대값	411
평균	183.19
표준편차	106.22

aq4 응답자 직업

A-4.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교수	1	49	18.5	18.5
교정직 공무원	2	100	37.7	37.7
보호직 공무원	3	116	43.8	43.8
		265	100.0	100.0

aq5 [공무원인 경우] 직급

A-5.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공무원인 경우에만 응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4급 이상	1	6	2.3	2.8
5급	2	32	12.1	14.8
6급	3	48	18.1	22.2
7급	4	129	48.7	59.7
8급	5	1	0.4	0.5
비해당	9	49	18.5	
		265	100.0	100.0

aq6 응답자 전공

A-6.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법학계열	1	75	28.3	28.3
경찰행정, 교정학 계열	2	19	7.2	7.2
사회학 계열	3	24	9.1	9.1
사회복지학, 심리학 계열	4	17	6.4	6.4
기타	5	127	47.9	47.9
무응답	8	3	1.1	1.1
		265	100.0	100.0

bq1 [재범방지방안] 만기출소한 흉악범죄자, 강력범죄자 등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필요성

B-1. 재범위험성이 매우 큰 출소자가 사회 내에서 방치되고 있어 범죄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만기출소한 흉악범죄자, 강력범죄자 등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그렇다	1	209	78.9	78.9
조금 그렇다	2	53	20.0	20.0
별로 그렇지 않다	3	3	1.1	1.1
		265	100.0	100.0

bq2 [재범방지방안]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의 효과

B-2.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기종료후의 전자감독제도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그렇다	1	145	54.7	54.7
조금 그렇다	2	105	39.6	39.6
별로 그렇지 않다	3	15	5.7	5.7
		265	100.0	100.0

bq3 [재범방지방안] 전자감독제/보호관찰을 강력범죄자에 확대 실시 필요성

B-3.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의 시행 이후, 전자감독이나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를 성범죄보다도 훨씬 위험한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그렇다	1	120	45.3	45.3
조금 그렇다	2	99	37.4	37.4
별로 그렇지 않다	3	38	14.3	14.3
전혀 그렇지 않다	4	8	3.0	3.0
		265	100.0	100.0

bq4 [재범방지방안] 강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관

B-4.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자들이 사회내에서 재범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관 중 어느 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찰	1	62	23.4	23.4
보호관찰소	2	120	45.3	45.3
교도소	3	62	23.4	23.4
검찰	4	8	3.0	3.0
잘 모르겠다	5	8	3.0	3.0
기타(중복응답)	6	4	1.5	1.5
무응답	8	1	0.4	0.4
		265	100.0	100.0

bq5 [재범방지방안] 경찰-교도소-보호관찰소의 다기관협력체계 필요성

B-5. 최근 경찰-교도소-보호관찰소 등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련된 기관들이 각기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측면에서 상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강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경찰-교도소-보호관찰소의 다기관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동제도의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그렇다	1	195	73.6	73.6
조금 그렇다	2	64	24.2	24.2
별로 그렇지 않다	3	6	2.3	2.3
		265	100.0	100.0

bq5_1 [재범방지방안] [다기관협력체계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

(B-5의 3,4번 응답자만)

B-5-1. 만일 다기관협력체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경우에만 응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각 기관의 독립성 훼손	1	4	1.5	1.5
범죄자 인권침해 우려	2	1	0.4	0.4
현재의 제도로 충분	3	1	0.4	0.4
비해당	9	259	97.7	97.7
		265	100.0	100.0

bq6 [재범방지방안] 형사사법기관의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정보공유 필요성

B-6. 대기관 협력체계와 관련하여 경찰-교도소-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들이 출소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그렇다	1	210	79.2	79.2
조금 그렇다	2	54	20.4	20.4
별로 그렇지 않다	3	1	0.4	0.4
		265	100.0	100.0

bq7 [재범방지방안] 표준화된 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필요성

B-7. 대기관 협력체계와 관련하여 경찰-교도소-보호관찰소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화된 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그렇다	1	184	69.4	69.4
조금 그렇다	2	64	24.2	24.2
별로 그렇지 않다	3	15	5.7	5.7
전혀 그렇지 않다	4	1	0.4	0.4
무응답	8	1	0.4	0.4
		265	100.0	100.0

bq8 [재범방지방안] 고위험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B-8. 재범위험성이 큰 강력범죄자 등 고위험군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등에 의한 시설내 구금의 장기화	1	85	32.1	32.1
전자감독이나 집중보호관찰 등에 의한 사회내 처우의 강화	2	68	25.7	25.7
지역사회의 민간 자원의 효과적 연계와 활용	3	12	4.5	4.5
위 2)와 3)의 병행	4	94	35.5	35.5
잘 모르겠다	5	4	1.5	1.5
무응답	8	2	0.8	0.8
		265	100.0	100.0

bq9 [재범방지방안] 가택구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B-9. 재범위험성이 큰 고위험군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가택구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그렇다	1	91	34.3	34.3
조금 그렇다	2	110	41.5	41.5
별로 그렇지 않다	3	57	21.5	21.5
전혀 그렇지 않다	4	7	2.6	2.6
		265	100.0	100.0

bq10 [재범방지방안]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

B-10. 최근 정부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일부의 흉악범죄를 범한 사람으로부터 DNA 신원 확인정보를 획득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뒤, 이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입법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필요하다	1	158	59.6	59.6
다소 필요하다	2	98	37.0	37.0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7	2.6	2.6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1	0.4	0.4
무응답	8	1	0.4	0.4
		265	100.0	100.0

bq11 [재범방지방안]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건의사항

B-11. 재범위험성이 큰 고위험군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밖의 사항이 있으시면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		159	60.0	60.0
<근로의욕>고취, 교도소에 취업장(일할 수 있는 공장)을 많이 마련하여 땀흘려 일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일하기 싫어 범죄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린다		1	0.4	0.4
1) 교정기관(시설 내 수용기관)에서의 효과적인 교정 1-1) 출소후 정기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교육 1-2) 범죄피해자의 피해 후유증 교육 2) 범죄예방활동강화 2-1) 범죄자 필벌(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제고) 노력 2-2) 언론기관 등에서의 범죄수법, 체포 단서(현장에서 지문, 모발 등 증거물의 취득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보조자제(범죄 관련 보도의 가이드 라인 설정 및 협조 노력) 2-3) 공평한 형사법의 집행		1	0.4	0.4

1) 보호관찰공무원의 역할이 막중하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함. 현재 보호관찰소 직원은 지침에만 맞으면 능사라는 소극적 업무자세가 만연. 즉 감사에 지적되지 않기 위한 업무처리가 대세.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지침, 그 중에서도 '집중대상자' 관련 지침도 하루 빨리 타파되어야 함. 한마디로 보람도 없고 기계적이다.	1	0.4	0.4
2) 천명이 넘는 보호관찰공무원의 역할이 무언지 모르겠다. 국민세금이 이렇게 헛되이 써어져도 괜찮은가를 고민해야 한다. 진정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1) 보호관찰의 제도에 사회적 제재방법을 강구하여 준수법적 기능을 강화하여 교정, 보호관찰, 경찰, 사회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강화	1	0.4	0.4
2) 보호관찰에 필요한 직원의 확보로 형식에 짜여진 관찰보다 사회내 처우 본뜻을 실현하는 행정구현 재범방지 특별기관을 설치, 사회인의 생활에서 보복의 두려움을 해소해야 함			
1) 엄격한 법집행 - 수감명을 살인한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사형을 확정되기도 반성을 하지 않는 일이 많다. 사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1	0.4	0.4
2) 교도소 내 수용관리도 엄격히 하여 신상필벌을 확립하고 사소한 규율위반도 반듯이 처벌(엄중 훈계 등) 하도록 한다			
1) 요즘 범죄가 흉악하고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누범자들에 의해 저질러 지고 있습니다. 경찰, 보호관찰, 교정, 민간 등이 연계된 강력한 보호 수단이 있어야 겠고, 이를 위반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0.4	0.4
2) 교정시설에 이를 강력법들을 교육하는 시스템 단순구금이 아닌 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을 불성실히 받을 때는 가석방 등이 없는 형태, 예) 형기를 가중하여 수용하고 교육 점수가 좋으면 가석방 등 혜택			
1) 타 기관 협력체가 좋은 방안으로 생각, 각 기관의 이기주의 때문에 협조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치추적의 경우에 감시, 감독은 경찰이 맡고, 처우, 지도, 원호는 보호관찰관이 맡는다면 효율적일 것 같음, 보호관찰관이 경찰에 파견을 나가 있을 수도 있음. 2)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의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이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음.	1	0.4	0.4
가족회복프로그램 등의 확대 시행으로 가족적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사회내 처우를 강화,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련된 기관들의 상호 연계성 강화, 사형제도의 부활	1	0.4	0.4
가중처벌	1	0.4	0.4
가중처벌, 구금 장기화.	1	0.4	0.4
가중처벌, 사회내처우보다는 구금시설을 활용	1	0.4	0.4
가중처벌법의 확대화, 집중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 강화, 재범방지교육 수시 실시	1	0.4	0.4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사회내 처우시 각종 제재방안 등을 확대 강구할 필요성 제기(예 : 전자팔찌 등, 가택구금)	1	0.4	0.4
가택구금제도가 필요, 원칙적으로 집에서 못나가게 해야함. 시설수용은 비용이 많이 듦. 성범죄 위치추적을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대책밖에 안됨(기계적인 오류도 있음), 결론적으로 가택구금제도를 도입	1	0.4	0.4
가택구금형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이 필요	1	0.4	0.4

개선극관 고위험군 범죄자의 경우 보호감호제도 부활 요망	1	0.4	0.4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직장과 경제적 자립이 필요	1	0.4	0.4
검증된 범죄예방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 현직 직원에 대한 전문적 지원	1	0.4	0.4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적사항, 얼굴 등을 공개하여 일체의 모방범죄가 없도록 하여야 함. 법의 테두리내에서 엄정한 판단을 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형벌을 최대한 집행 및 판결	1	0.4	0.4
경찰, 교도소 등과의 긴밀한 정보교환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가 필요함.	1	0.4	0.4
경찰, 교도소, 검찰, 보고관찰소 등 업무연계하여 국가차원에서 고위험군 범죄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인권을 내세워 시설내 수용시 질서 혼란 등위 행위 강력히 대처하여 응보적 차원의 재범방지 대책에 있어야 합니다	1	0.4	0.4
경찰서 등에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1	0.4	0.4
경험상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기타 강력 범죄행위자보다 간교한 특성이 있고, 동일 버모지를 상습으로 자행하고 수용생활에도 부적응 하는 자들이 많음. 이러한 사람들로 뇌구조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 일정기간 동안 시설(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에 수용, 심리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1	0.4	0.4
고 위험군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1	0.4	0.4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추적시스템 강화(인터넷 ip추적, 핸드폰 번호 추적 등)	1	0.4	0.4
고위험군 범죄자의 분류기준과 그들에 대한 신원 및 DNA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안, 이를 정보에 대한 관련 유관기관의 연계 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들 정보가 남용될 우려 위험성을 차단하는 장치의 마련도 고려되어야 한다. 처음 신상공개는 성범죄자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고위험군 범죄자 다음에는 어디까지 신상공개할 것인지?	1	0.4	0.4
고위험군 범죄자의 행동과 생활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	1	0.4	0.4
고위험군이라면 시설내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교정, 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물론 그 비용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겠지만, 그 비용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제 자식을 마음 놓고 밖에 나가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0.4	0.4
과학적 분류를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개선의지가 분명한지와 죄책감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처우개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0.4	0.4
과학적 분류심사를 통한 처우의 차등화 장기 수형자의 진정한 사회복귀력 및 개선정도에 따라 가석장 혜택 부여가 절실	1	0.4	0.4
교도소 수용시 재범방지치료 프로그램등을 통한 반복 교육 및 보호관찰소 등의 지속적인 관심	1	0.4	0.4
교도소 수용시 집중적인 인성 교육 및 직업 훈련, 출소 후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 필요,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강화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개발	1	0.4	0.4
교도소내 재사회화 프로그램	1	0.4	0.4
교도소내 정예직업훈련 강화로 출소 후 사회적응능력 배양	1	0.4	0.4

교정시설 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필요	1	0.4	0.4
교정시설 내에서 정신, 인성교육을 보다 강도 높게 실시하여 수용자 정서 순화가 필요	1	0.4	0.4
교정시설내에서부터 엄격한 수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1	0.4	0.4
교정시설에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거나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보호관찰제도중의 하나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활용과 가택구금제도 도입이 필요함	1	0.4	0.4
교정행정에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 범죄자의 성향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 활용	1	0.4	0.4
교정행정의 그릇된 방향 설정으로 인해 위하력의 저해를 초래, 강력한 형벌인 사형제도를 즉시 시행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를 활성화	1	0.4	0.4
국가 특수시설에서 집중하여 특별 정신교육 실시, 국가의 형벌집행 강화(사형집행)	1	0.4	0.4
다기관 협력체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개선과 데이터의 공유와 함께, 각 기관 관리자간 상설협의기구의 설립, 운영이 필요함	1	0.4	0.4
다기관 협력체계의 효과적 구축, 역할 분담, 특히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의 경우에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므로 치료감호소, 국립정신병원 등과의 연계가 필요, 또한 치료감호 종료후의 처우 방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절실	1	0.4	0.4
만기출소 강력(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로서의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이 필요	1	0.4	0.4
법령을 새로이 재정비하고 법제정을 통하여 사회와 격리할 수 있는 감호법을 만들면 좋은텐데. 위헌결정이 문제?	1	0.4	0.4
법원, 검찰,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소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와 정보공유(전산시스템 일원화)	1	0.4	0.4
법을 좀 더 강화시키고 엄중히 집행	1	0.4	0.4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 필요, 단 극도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1	0.4	0.4
보호관찰 인력, 장비, 시설의 보강으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봄	1	0.4	0.4
보호관찰 직원의 심리학적 전문성 강화, 방문지도시 2인 1조 감독,지도가 가능한 인력활용시스템 구축	1	0.4	0.4
보호관찰기능 강화, 유관기관 정보 공유	1	0.4	0.4
보호관찰소의 기능 및 권한 강화 및 지시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	0.4	0.4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이 특히 필요함	1	0.4	0.4
사형제도 시행, 사회내 처우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강화	1	0.4	0.4
사형제도의 적극 진행	1	0.4	0.4
사형집행 필요, 구금시설에서의 엄중한 수용 질서	1	0.4	0.4
사형확정과 사형시킬것, 중구금시설 확대, 고위험군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력 대처	1	0.4	0.4
사회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지도하고 품어야 하며, 전과자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함	1	0.4	0.4
사회내 집단 생활	1	0.4	0.4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고 또 범형량을 강화하여 처벌강화가 중요, 흉악범은 인정적으로 처우하거나 관리하여서는 될 상황이 아니므로 형량 장기화하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함	1	0.4	0.4
사회와 완전 격리-사안에 따라 사형, 무기형	1	0.4	0.4
사회와의 영구 격리 (그동안 수백년동안 훌륭한 이론과 시스템이 있었지만 결과는 교정, 교화에 모두 실패했다)	1	0.4	0.4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여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갱생보호공단과 같은 시설에서 숙식 및 일자리를 제공하면 재범방지에 이바지 할 것 같음	1	0.4	0.4
삼진아웃제 도입 필요	1	0.4	0.4
성범죄등의 경우를 보면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환자로 분류하여 치료하는 것이 적당하나 사회적 시설 등 미비점이 많아 시설내 구금의 장기화(누범시)가 적당하다고 봄	1	0.4	0.4
성인이 된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처우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인권과 충돌할 위험이 큼니다. 이보다는 청소년들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1	0.4	0.4
수사, 재판, 형집행(시설 내 처우) 사회내처우 과정에서 범죄자에 대한 특이사항, 관심사항이 관철되면 유관기관과 그러한 정보를 이체, 공유하여야 합니다	1	0.4	0.4
시설내 처우시에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그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출소 후에 익힌 기능과 직업훈련 결과를 기업, 사회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경제적, 취업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내 안정망의 구축이 시급,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 역할 필요,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 큼	1	0.4	0.4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 및 복지금의 지원과 취업 알선이 우선	1	0.4	0.4
엄격한 격리수용시설 확보 및 실질적 교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1	0.4	0.4
엄중한 격리된 수용시설	1	0.4	0.4
우발적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하나의 '질병'에 걸린 환자라고 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또한 상습성범죄자, 마약사범, 사이코패스등은 전혀 다른 성격의 범죄자로 그 '처우'나 '치료' 또한 전혀 다른 개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함	1	0.4	0.4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효과 증대 제한사항 미준수시 강력한 처벌이 있음을 제도 초기 단계에 강력히 홍보	1	0.4	0.4
일반적 예방 효과 증대를 위한 사형제의 적극 확대 실시	1	0.4	0.4
재범고위험군 범죄자의 사회내 처우시 보호관찰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할 것이나, (보다 밀착된 관리가 필요) 인력과 예산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	1	0.4	0.4
재범방지 전담인력 확대	1	0.4	0.4
재범방지를 위해 재범시 처벌기준강화 및 처벌에 대한 인식 제고	1	0.4	0.4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교육과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출소 후에도 사회내에서 정기적인 교육에 참여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	1	0.4	0.4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본인 및 가족까지 그룹으로 편성되어 관리가 되어야 함. 사회물의사범은 가족까지 공동책임 또는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되고 1차적 제어 장치가 필요함	1	0.4	0.4

재범위험성 평가 측정도구 개발(가장중요), 객관적이고 검증될 수 있는 것, 전문인력 확보(범죄심리학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특채)	1	0.4	0.4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은 사회내처우보다 시설내처우를 통한 강력한 구금형을 통한 범죄의 무력화를 실시	1	0.4	0.4
재범위험성이 큰 강력범죄자 등 고위험군 범죄자 통칭하는 것은 곤란(구별이 필요함), 재범위험성이 큰 범죄와 강력범죄는 다름, 혼용하면 부정확한 결론에 도달.	1	0.4	0.4
재범위험성이 큰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하여 출소시 심사하여 관련 자료를 경찰 및 검찰에 통보하여 사회내에서도 우범자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1	0.4	0.4
재범위험성이 큰 범죄자 집금수용, 교육 필요함	1	0.4	0.4
재범위험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책으로 관리하는게 중요함	1	0.4	0.4
재범위험집단에 대한 미시적 예측 관리 치료적 접근과 함께 사회내 구성원의 공동적 책임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이념을 정립하여 공동체적 접근체제를 구성해야함	1	0.4	0.4
전산화에 따른 정보의 공유 및 관리(각 기관의 정보공유)	1	0.4	0.4
전자감독제도의 중점이 재범방지에만 치우쳐서는 안되고 사회내처우로서 가택구금의 의미도 함께 강조되어야 함.	1	0.4	0.4
전자감시제도의 확충	1	0.4	0.4
죄질, 경력 등 감안, 가중처벌 필요	1	0.4	0.4
중구금 교도소 설치 및 독거수용	1	0.4	0.4
지역사회 차원의 배려	1	0.4	0.4
지원시스템과 강력감시시스템을 동시에 제공하여 당근과 채찍이 되도록 할 필요있음	1	0.4	0.4
직장 알선 등 사회처우개선 및 교정 감독의 강화	1	0.4	0.4
집단 처우 프로그램 실시, 다양한 심성순화 프로그램 개발 시행, 집중보호관찰제 실시	1	0.4	0.4
집중보호관찰실시(강화), 일정 요건 충족시 수용시설 재수감할 수 있는 법체제확립 (재범과 별도로)	1	0.4	0.4
처벌강화	1	0.4	0.4
최근 범죄의 다양성, 잔인성의 근본이 예방프로그램의 미비가 아닌 생활고와 가정파괴 등의 형태에 원인이 더욱 많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이 더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1	0.4	0.4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권의 제한을 요하는 제도의 도입을 해야될 것임(예:태형 및 공개적 형벌 제도 등)	1	0.4	0.4
행위에 대한 결과 책임과 동시에 행위의 원인에 대한 비권력적인 방법을 통한 사회적응화가 필요함	1	0.4	0.4
현재의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제도의 운영 및 다기관 협력체제가 필요하나, 그 구체적인 기준은 재범방지와 인권보호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봄	1	0.4	0.4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사회내 처우를 할 수 있는 제도 신설 필요, 민간차원 시설 운영,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1	0.4	0.4
형벌 제도 강화 및 재범자에 대한 가중 처벌법 도입, 실시	1	0.4	0.4
형사사법기관의 공조를 통한 관리의 효율화	1	0.4	0.4
환경개선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1	0.4	0.4
흉악범에 대해서는 일정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소 간 정보공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	1	0.4	0.4
265	100.0	100.0	

cq1 [교정/보호기관 연계방안] 교정직-보호직 공무원간의 상호 업무 이해도

C-1. 교도소 등 시설내 처우를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과 보호관찰소 등 사회내 처우를 담당하는 보호직 공무원들이 상호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그렇다	1	12	4.5	4.5
조금 그렇다	2	70	26.4	26.4
별로 그렇지 않다	3	162	61.1	61.1
전혀 그렇지 않다	4	21	7.9	7.9
		265	100.0	100.0

cq2 [교정/보호기관 연계방안]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상호연계 강화 필요성

C-2. 향후 범죄자 처우와 관련하여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이 상호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그렇다	1	174	65.7	65.7
조금 그렇다	2	78	29.4	29.4
별로 그렇지 않다	3	9	3.4	3.4
전혀 그렇지 않다	4	4	1.5	1.5
		265	100.0	100.0

cq3 [교정/보호기관 연계방안] 교정보호청 신설에 대한 검토 필요성

C-3. 과거 교정조직과 보호조직을 통합하여 소위 「교정보호청」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교정보호청의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그렇다	1	102	38.5	38.5
조금 그렇다	2	84	31.7	31.7
별로 그렇지 않다	3	55	20.8	20.8
전혀 그렇지 않다	4	24	9.1	9.1
		265	100.0	100.0

cq3_1 [교정/보호기관 연계방안] (교정보호청 필요하다면) 설치 시기

(C-3의 1,2번 응답자만)

C-3-1. 만일 교정보호청을 설치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년 이내	1	21	7.9	7.9
1년초과 3년 이내	2	77	29.1	29.1
3년 초과 5년 이내	3	54	20.4	20.4
5년 초과 10년 이내	4	27	10.2	10.2
무응답	8	7	2.6	2.6
비해당	9	79	29.8	29.8
		265	100.0	100.0

cq4 [교정/보호기관 연계방안] 교정직과 보호직의 상호 인사교류 필요성

C-4. 현재 교정직 공무원과 보호직 공무원간의 상호 인사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교정직과 보호직의 상호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그렇다	1	90	34.0	34.0
조금 그렇다	2	84	31.7	31.7
별로 그렇지 않다	3	53	20.0	20.0
전혀 그렇지 않다	4	36	13.6	13.6
무응답	8	2	0.8	0.8
		265	100.0	100.0

cq4_1 [교정/보호기관 연계방안] (인사교류 필요하다면) 교류 직급

(C-4의 1,2번 응답자만)

C-4-1. 교정직 공무원과 보호직 공무원간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해당직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관장급	1	15	5.7	5.7
5급-7급 정도의 중간관리자급	2	121	45.7	45.7
8급 이하의 실무자급	3	26	9.8	9.8
중간관리자급+실무자급	4	4	1.5	1.5
기관장급+중간관리자급+실무자급	5	4	1.5	1.5
무응답	8	4	1.5	1.5
비해당	9	91	34.3	34.3
		265	100.0	100.0

cq5 [교정/보호기관 연계방안] 교정직-보호직 공무원 채용 및 연수과정에서 상호연계 필요성

C-5. 현재 교정공무원과 보호관찰공무원은 채용시 별개의 직군으로 되어 있고 시험과목도 상이하며 임용후 연수과정도 상호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정직 공무원과 보호직 공무원의 채용 및 연수과정에서도 상호 연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그렇다	1	84	31.7	31.7
조금 그렇다	2	106	40.0	40.0
별로 그렇지 않다	3	49	18.5	18.5
전혀 그렇지 않다	4	24	9.1	9.1
무응답	8	2	0.8	0.8
		265	100.0	100.0

cq6 [교정/보호기관 연계방안] 교정직-보호직 공무원 연계방안 건의

C-6. 교정직공무원과 보호직공무원의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밖의 사항이 있으시면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85	69.8	69.8
1) 장래에는 독립된 청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 이나 충분한 논의와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그 부작용을 최 소화해야함. 2) 기존의 보호관찰소, 소년원 통합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보호관찰소는 개청때부터 통합의 연속이 있음, 각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인 통합이 바람직.		1	0.4	0.4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처우 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수용기간중 의 대상자 생활 기록 등 대상자의 생활태도, 성향, 인성에 대 한 정보를 공유해야함		1	0.4	0.4
과거 20~30년 전과 비교하여 교도소내 소년수용자 수용인원 은 대폭 줄었습니다. 교정직과 보호직 상호 직원교류를 하여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관리에 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0.4	0.4
교도소 및 소년원 출원자의 처우방안 - 형기를 마치고 출소 한 재소자나 소년원에서 퇴원한 퇴원생은 각각의 기관에서 1 년정도 사후지도 형식으로 지도하다가 보호관찰소로 인계함 이 바람직하겠음 (장기간 같이 생활을 하였으므로 누가보아 도 재소자나 퇴원생의 통태를 정확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1	0.4	0.4
교육기관의 연계성 강화		1	0.4	0.4
교정 및 보호직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하게 교육 및 연수를 통하여 상호 교류 및 정보공유 기타 연계시스템에 의 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1	0.4	0.4
교정보호청 설치가 우선이며 설치 후 인사교류 및 승진 제도 등 연계하여 수행자 시설내 처우 및 출소 후 재범 방지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0.4	0.4
교정보호청이 설치되고 기관장급 인사교류가 시행되면 자연 스럽게 협력 및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		1	0.4	0.4

교정업무와 보호업무의 상호 의존성 및 연계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제고, 교정업무와 보호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범죄예방을 위한 양 지역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시킴, 인사교류/직군 통합 또는 연계	1	0.4	0.4
교정조직과 보호조직 통합(교정보호청 신설)	1	0.4	0.4
교정직 공무원과 보호직 공무원간 인사교류는 직급을 기준으로 하는 일괄적 적용보다는 해당공무원의 전문성에 따른 교류가 더 적합하리라 생각함.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심화된 전문화 교육이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임.	1	0.4	0.4
교정직 공무원과 보호직 공무원의 직렬 등을 동일 조직내에서 관리하게 하면 조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됨	1	0.4	0.4
교정직 공무원의 기득권 포기, 보호직 공무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강화	1	0.4	0.4
교정직 및 보호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하루 빨리 교정보호청을 독립시켜야 하며 그 위에서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연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	1	0.4	0.4
교정직과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교류 확대(근무지 전환 등), 직렬 통합으로 근무지 전환, 시스템 통합	1	0.4	0.4
교정직과 보호직 인사교류 확대, 교정직과 보호직 교육 확대 등	1	0.4	0.4
교정직과 보호직이 연관된 업무는 많이 있으나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분류직이나 교무직 등과 먼저 교류를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	1	0.4	0.4
교정직렬과 보호직렬간의 파견 근무	1	0.4	0.4
근무기간 중 각 교육기관을 이용한 교육의 교류 및 교류교육 프로그램개발로 상호이해의 폭 확대	1	0.4	0.4
기관장 급에서 최하위직까지 인사교류의 증대	1	0.4	0.4
다기관 협력체계에 의한 정보공유로 상호 업무이해, 가석방 업무의 일원화(교도소내 분류직을 보호직으로 전직하고 파견 형식 근무), 향후 상호이해로 연계강화	1	0.4	0.4
두 조직의 통합시 받게될 하위 직급의 직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 대한 대책부터 수집해 주시기 바람	1	0.4	0.4
두 조직의 통합은 필수적이나, 조직내 이기주의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 형사사법의 일원화로 조직내 수장과 구성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	1	0.4	0.4
범죄자 처우라는 측면에서는 교정직, 보호직 공무원의 협력 및 연계 강화가 필요, 교정보호청 등 조직이 통합될 경우 조직간의 이해타산으로 오히려 그 취지에 반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범죄자 처우 자료의 상호 열람 및 조회(판결전 조사 내용 등), 직원 교환 근무제 등이 현실적 대안으로 보임.	1	0.4	0.4
범죄자를 직접 결착하여 다루어본 교정공무원의 노하우를 보호관찰에서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교정기관 교육교화과에서 실시하는 교화프로그램을 보호관찰에서 실시하는 수량 또는 보호관찰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볼때 어느것이 형식적이고 어느것이 내실있는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모두 경험해 보아야 진정 업무에 발전이 있을 것이다.	1	0.4	0.4

<p>법무부지침으로 협력 및 연계방안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구속력을 갖도록 함. 1) 예를 위 안이 나오면 분기 1회, 반기 1회 등 지역별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소년원의 기관장, 과장 등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함 2) 현재도 각 지역별로 검사장이 주축하는 법무행정협의회에서 안건들이 다루어지고 있음. 3) 만약 교도소, 보호기관 간의 실질적인 업무간담회가 이루어진다면 법무행정협의회보다 더 구체적으로 안건이 다루어 질 수 있음 4) 예를 들어 가석방되는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이 부과될 경우 그들의 신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 등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을 사회내처우도 자연스럽게 연계</p>	1	0.4	0.4
<p>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보호관찰자의 재량성을 확대하여 통제기능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현재는 일부부내 대하여 집행자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많은 괴리 현상이 누적되어 있다</p>	1	0.4	0.4
<p>보호관찰의 한 범주안에서 가석방, 가출소, 가퇴원, 구속된 이후 집행유예로 나올 때 교정시설에서 1차 시설감금된 이후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바 이를 시스템화하여 초기범죄수사단계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를 서로 대상자에 대한 공통된 사항이 교류되기를 희망함.</p>	1	0.4	0.4
<p>보호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의 업무는 외형상 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처우 기법은 상이하다고 생각, 선부른 인사교류는 각 직렬, 직류의 전문성을 훼손 시킬 수 있다</p>	1	0.4	0.4
<p>보호직 공무원의 업무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음. 다만 양 기관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사회의 무관심과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음. 수용기관에서 자립을 위한 기술, 자격증 취득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한 준비에도 출소 후 사회와 연계되는 시스템(아주 효과적인)이 절실히 필요</p>	1	0.4	0.4
<p>사회내 처우인 보호관찰과 시설내 처우인 교정인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도소에서 가석방자 중 일부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므로 수형정보 등 교정자료를 보호관찰공무원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교정보호정보보다는 관리프로그램등 정보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됨.</p>	1	0.4	0.4
<p>상호 전자시스템 접근 허용을 통한 자료 공유 권한 부여</p>	1	0.4	0.4
<p>상호간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교육, 참관, 실습, 업무 교류)</p>	1	0.4	0.4
<p>상호간 업무의 이해와 협조를 위하여 상호교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을 강화</p>	1	0.4	0.4
<p>상호간 업무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과정에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p>	1	0.4	0.4
<p>상호간 인사교류</p>	1	0.4	0.4
<p>상호공유되는 업무에 대한 파견형식의 교류로 시작하여 단계적 검증 및 합의가 필요</p>	1	0.4	0.4
<p>상호교류촉진(상호 방문 등을 통한 업무 이해 증진)</p>	1	0.4	0.4
<p>상호업무연계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 현시점에 밀접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국가차원으로 보다 앞으로 갱생사업이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p>	1	0.4	0.4
<p>상호연계교육강화</p>	1	0.4	0.4
<p>상호제도의 이해, 실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필요</p>	1	0.4	0.4

서로간의 업무과약을 할 수 있는 상호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방문과 상호교류 및 연수프로그램의 실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한 유형의 범죄자에 대한 공동의 교정 및 보호노력을 위한 연구와 공동대응방안의 마련을 위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0.4	0.4
선발과 교육 훈련 근무 전단계에 걸쳐 연계하고 장기플랜이 필요	1	0.4	0.4
수용 및 처우에 관한 프로그램의 공유	1	0.4	0.4
수용기록내용 등 상호업무기록 내용 공유(예:대상자의 교도소 수용시 기록카드내용 등)	1	0.4	0.4
수용생활 정보 이용	1	0.4	0.4
수용생활 중의 정보, 출소 후 생활의 정보 등 공유, 협력을 통해 개별적 특성에 따른 관리 방안의 효율적인 체제 구축	1	0.4	0.4
수용자 모든 기록 공유	1	0.4	0.4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는 각각의 개별특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상위직급 5급이상 인사교류를 통해 장기적, 지속적으로 재범방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0.4	0.4
시설내 처우와 시설외 처우 등 모두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본 목적은 같으므로 통합 및 교류가 필요	1	0.4	0.4
시험을 같이 본다든지, 중하위권 직급의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1	0.4	0.4
실질적으로 모든 범죄자가 교도소 수용과정에서 교정교화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만큼 해당 범죄자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교도관들이 출소자의 생활 및 재범우려, 특이사항에 대해 관찰 보호관찰소 등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적 '채널'이 있다면 재범방지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1	0.4	0.4
양직군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상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양직렬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게 되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인사교류 및 견학 등)	1	0.4	0.4
업무의 상호 교류 증대	1	0.4	0.4
업무의 속성상 이질적이어서 서로 호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통합보다는 협력 및 연계방안에 대한 고려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봄. 소년원이 본질적으로 대상만 청소년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수용시설이고 보호직은 타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중시되는 점에서 강제적인 통합이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비판적 시각을 고려하면 교정직과 보호직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이런점에서는 오히려 전산상의 연계가 쉬워지는 측면에서 제반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보호직의 업무과다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제도 도입은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봄	1	0.4	0.4
업무의 연계성 및 상호 정보교환을 위하여 통합성 업무 연구	1	0.4	0.4
업무의 협력과 연계를 위해서 반드시 조직을 통합 운영 필요	1	0.4	0.4
원활한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업무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 증대	1	0.4	0.4
위험성평가 도구 공유,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이동시 시설내 또는 보호관찰소내 기록 송부의 의무화(일본의 경우 법개정으로 2007년 4월부터 시행중)	1	0.4	0.4
이를 근거로 한 교류방안의 모색	1	0.4	0.4
인사교류	1	0.4	0.4

인사교류의 적극성, 업무의 연계성에 맞추어 시스템 일원화	1	0.4	0.4
일단 서로 양 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된다	1	0.4	0.4
일정기간 동안의 교차 근무제도 시행. 공동교육을 통하여 협력사항 및 연계 사항 합의점 도출	1	0.4	0.4
임시석방자의 처우에 관한 협조, 집행유예 선고자 등의 수용자료(분류자료 등), 판결전 조사시 공간적 협조	1	0.4	0.4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통합도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1단계로는 수사기록, 공판기록, 행형기록의 중요부분이 공유되어야 한다. 2단계로는 중간관리자급의 인적교류(직급, 직열 통합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상당기간 거친 후 3단계로 하위직 인사교류와 교정보호청 조직 고려	1	0.4	0.4
전산시스템 연계, 업무 효율성 제고	1	0.4	0.4
전산으로 상호간 (수용자)조회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 교정보호청이 생겨서 인사가 자유롭게 왕래되어야 함	1	0.4	0.4
정보교환의 원활	1	0.4	0.4
조직과 인사의 통합이 필요하고, 실제 사회내처우와 시설내 처우의 실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무적 순환 근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실제 현장근무를 통하여 각 처우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바탕위에서 재범의 방지 위한 노력의 제고가 향상될 것임	1	0.4	0.4
조직통합이란 강제적이고 구조적 접근보다 양 기관간의 교류를 증대시키고 각각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면서 같이 재범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고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겠음	1	0.4	0.4
중간관리자급 인사교류 확대, 각종 정보시스템 공유 확대	1	0.4	0.4
중간관리자의 인사교류를 통해 범죄자의 행태를 연속선상에서 파악, 관리함으로써 재범방지와 교정 교화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음, 청단위에서 시범지역을 정하여 실시 후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1	0.4	0.4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가칭 교정보호청등으로 통합하여 일정한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되어야 함, 청장급은 개방형을 통해 객관적인 입직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1	0.4	0.4
직원 임용, 수용자 관리 시스템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시스템 상으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장치 필요	1	0.4	0.4
출소자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처우에 출소자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어 출소자에 대한 여러 정보 교환이 있으면 출소자에 대한 처우에 도움	1	0.4	0.4
출소후 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등으로 재범율 감소 및 재입소율 감소 등으로 민생치안 확보	1	0.4	0.4
통합필요	1	0.4	0.4
과건근무(상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을 우선하고, 협력, 연계부분을 간단히 시도	1	0.4	0.4
현안 문제에 대한 기관간 업무간 강화 중 정례화 필요	1	0.4	0.4
	265	100.0	100.0

dq1 [출소자 지원] 교도작업/직업훈련이 출소후 취업에 도움되는 정도

D-1.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참여했던 교도작업이나 직업훈련이 출소 후에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도움이 된다	1	11	4.2	4.2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2	129	48.7	48.7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109	41.1	41.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16	6.0	6.0
		265	100.0	100.0

dq2 [출소자 지원] 현 갱생보호제도가 사회복귀/재범방지에 도움되는 정도

D-2.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하는 출소자에 대하여 현재의 갱생보호제도는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도움이 된다	1	12	4.5	4.5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2	150	56.6	56.6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96	36.2	36.2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7	2.6	2.6
		265	100.0	100.0

dq3 [출소자 지원] 출소자 갱생보호/사회복귀 위해 교도소-보호관찰소 연계 강화 필요성

D-3. 출소한 수형자의 갱생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도소-보호관찰소의 연계 및 협력체계가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그렇다	1	148	55.8	55.8
조금 그렇다	2	89	33.6	33.6
별로 그렇지 않다	3	26	9.8	9.8
전혀 그렇지 않다	4	2	0.8	0.8
		265	100.0	100.0

dq4 [출소자 지원] 출소자 주거/취업지원 위한 정부 예산지원 확대 필요성

D-4. 출소한 수형자의 주거지원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보다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그렇다	1	151	57.0	57.0
조금 그렇다	2	93	35.1	35.1
별로 그렇지 않다	3	18	6.8	6.8
전혀 그렇지 않다	4	3	1.1	1.1
		265	100.0	100.0

dq5 [출소자 지원] 출소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D-5. 출소한 수형자의 갱생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에 대기업 등 민간차원에서의 갱생보호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세제지원이나 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지원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그렇다	1	158	59.6	59.6
조금 그렇다	2	87	32.8	32.8
별로 그렇지 않다	3	17	6.4	6.4
전혀 그렇지 않다	4	3	1.1	1.1
		265	100.0	100.0

dq6 [출소자 지원] 갱생보호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할 필요성

D-6. 갱생보호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118	44.5	44.5
조금 필요하다	2	116	43.8	43.8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29	10.9	10.9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2	0.8	0.8
		265	100.0	100.0

dq7 [출소자 지원] 출소자 주거지원 등 사회내감독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

D-7. 2009. 5. 28. 개정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석방자 등에 대해 ‘거주장소제한’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소위 필요적 갱생보호제도가 실현되었습니다. 이렇게 주거가 불안정한 출소자 등에 대해 주거를 지원하면서 사회내에서의 보호관찰 등의 사회내감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144	54.3	54.3
조금 필요하다	2	99	37.4	37.4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15	5.7	5.7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1	0.4	0.4
무응답	8	6	2.3	2.3
		265	100.0	100.0

dq8 [출소자 지원] 출소자 갱생보호/사회복귀를 위한 건의사항

D-8. 출소자 갱생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밖의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0	71.7	71.7
1) 갱생보호시설 자체로서 만족하지 말고, 적정 인원이 가족애를 느끼면서 사회생활을 적응했으면 한다. 2) 현재 성실화하려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잘하는데 일부 개성, 성장과정, 정신 질환 등으로 자신이 생활비를 부담능력이 없기에 진료처우를 걱정한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3)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벌어들인 돈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서비스 기능 확대하여야 한다		1	0.4	0.4
1) 현재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대주택지원사업이 활성화되면 좋겠음. 갱보의 숙소나 민간의 쉼터는 대상자들이 단체생활때문에 꺼리고 있음. 갱보의 경우 범죄자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싫어함 - 예산, 확보가 관건이고, 범죄자가 일반시민보다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 있겠지만 숙소 지원및 취업알선이 필요, 위험소지가 있겠지만 근로 의욕이 없는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직업을 갖도록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위반하면 제재를 가함(이것은 형기종료자 보안처분이 도입될 경우 가능)		1	0.4	0.4
갱생보호는 생계형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 실업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는 하나 생계형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지는 의문임		1	0.4	0.4
갱생보호를 강화시켜야 한다. 법무부의 관심 강화(현재 별로 갱생보호에 무관심)		1	0.4	0.4
갱생보호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지원을 해주고 갱생보호대상자는 일정한 조건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즉 조건부 지원) ex) 월 150만원 근로소득을 조건으로 5년간 근무할 경우 주거(집)을 지원해 준다 등		1	0.4	0.4

갱생보호시설을 강화하고 사회시설과 연계하여, 출소하는 경우 사회복귀를 위한 철저한 대비(예를 들면 취업이라든지, 주거 그리고 멘토제도의 활성화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1	0.4	0.4
갱생보호시설을 확충하여 사회적응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 보호시설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	1	0.4	0.4
갱생보호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	1	0.4	0.4
경제후호 활성화, 취업알선 활성화, 범죄예방위원의 효율적 활용(현, 범방위원은 대상자 사회복귀에 전혀 도움이 안됨)	1	0.4	0.4
경제여력이 없는 수용자가 출소시 당면하게 되는 문제가 의, 식, 주 입니다. 갱생보호공단과 별도로 출소 직후 이들을 1주~2주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소가 필요. 일단 출소후에도 막막하지 않게...	1	0.4	0.4
경제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	1	0.4	0.4
경제지원을 확대하되 범죄심리상담 등 범죄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인 교육이 병행.	1	0.4	0.4
교도소 내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권한을 더 많이 줬으면...	1	0.4	0.4
교도소 등(시설내 수용) 생활시 성실하고 갱생복귀의지가 높은 수용자는 건전한 사회복귀와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수용자부터 특별관리를 하고 출소후에도 각사회단체가 연계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 등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1	0.4	0.4
교도소내 직업훈련과정의 사회성을 겸하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정을 신설해야 하며 출소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즉 보호관찰하는 기능이 아닌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출소와 동시 취업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임	1	0.4	0.4
교정, 보호관찰, 지역사회가 연계된 프로그램이 절실함.	1	0.4	0.4
교정과정에서 속죄할 수 있는 효과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예 :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범 프로그램의 도입)	1	0.4	0.4
교정시설에서의 취업교육, 기술교육 등 강화, 출소자 애로해결센터(가칭)등을 설치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적극적 해결 노력 필요	1	0.4	0.4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필요, 이를 국가에서 육성 발전	1	0.4	0.4
기관간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강화	1	0.4	0.4
기업으로부터 맞춤형 직업훈련의 필요성	1	0.4	0.4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세계혜택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출소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1	0.4	0.4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위치과약 철저, 관리 철저	1	0.4	0.4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직업 훈련 과목의 필요성	1	0.4	0.4
단계 및 사회복귀 지원하여 무작정 지원에 따른 예산낭비, 출소자의 안일한 노력(마음가짐)을 방지	1	0.4	0.4
민간자원을 대폭활용함이 요구됨	1	0.4	0.4
민간차원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사회복귀 지원시 다양한 혜택 등의 부여로 적극적인 동참 유도	1	0.4	0.4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출소자의 적응이 힘들, 갱생보호위원회 확장으로 국가적 지원 확대	1	0.4	0.4
법무보호공단 출소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 확충과 인력증원	1	0.4	0.4
사회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갱생관련 조직을 파악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함	1	0.4	0.4
사회모두의 관심이 필요	1	0.4	0.4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 교육 극대화	1	0.4	0.4
사회적 관심증가	1	0.4	0.4
사회적응의 법적 안정성 도모, 가석방자 등에 대한 필요적 갱생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특히, 지도 및 관리 지침의 연계, 범방위원들간의 협력이 중요	1	0.4	0.4
생계형 범죄자는 일정기간 사회내에서 교육 등을 통하여 생계대책을 지원해 주고 범죄의 습성이 있는 자는 출소후에도 그런 특성을 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	1	0.4	0.4
성인대상의 사회복지가 갖는 한계를 인지하고 시간과 돈이라는 현실적 제약속에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방위주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1	0.4	0.4
수용시설내 직업훈련 강화, 현실에 맞는 직업훈련교육 실시	1	0.4	0.4
수용시설에서 근로 정신을 몸에 익혀 출소(의무 출석, 현실적으로 강력 제도 필요)	1	0.4	0.4
수용자 출소 후 사회내 일자리 창출확대 시행, 보호관찰제도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화활동 적극 추진	1	0.4	0.4
시설내 외의 맞춤형 교육으로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다양화 해야 할 것으로 본다.	1	0.4	0.4
신규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관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1	0.4	0.4
유관기관간의 업무협조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단일 기관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설 수용시 갱생보호여부를 파악하고 사회내 처우시 자동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등)	1	0.4	0.4
일정기간 기초생활의 토대를 마련하고 노동의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	1	0.4	0.4
잠재위주고 밥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1	0.4	0.4
장기복역 후 출소하는 사람은 생활이 불안정하므로 주거지원과 (일정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기술 습득, 안정적인 취업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일정기간 동안 지도, 상담을 통한 피드백이 필요	1	0.4	0.4
전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해소를 위한 매스미디어(영화, TV, 신문, 방송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전과자, 범죄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적 부정적 묘사 등을 자제할 필요성이 크고, 이들의 갱생의지를 고무할 프로그램이나 이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일조해야 한다 생각함. 일반시민, 시민단체의 노력도 중요함	1	0.4	0.4
전과자라는 낙인은 사회복지의 큰 걸림돌이며 재범율을 높이는 요인, 가장 필요한 것은 적성검사 등을 강화하고 범죄예측 표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기술습득. 현재 시행되는 기술교육은 획일적이며 개인의 성향이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교도소 자체에서 실시하는 직업 교육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	1	0.4	0.4

전과자를 우선 내이웃으로 생각하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고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이 필요	1	0.4	0.4
정부에서 기업과 연계하여 기술을 습득하여 개인창출로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1	0.4	0.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국가예산 증액), 지원 후 끝까지 확인 감독	1	0.4	0.4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원 필요	1	0.4	0.4
주거지원, 취업지원	1	0.4	0.4
지방자치단체(기초생활 수급권자)지원 갱생보호사업 활성화	1	0.4	0.4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서 취업 알선 및 직접적 일자리 제공, 이들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제공	1	0.4	0.4
직업의 전문성 보다 근로 정신 함양,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고취 등 정신교육강화(나태하고 게으름에서 재범의 발생률이 높음)	1	0.4	0.4
채찍(모니터링 강화)와 당근(주거복지 등 지원강화)이 동시에 균형적으로 공급되어야 갱생보호, 사회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1	0.4	0.4
최소한의 환경적, 물질적 안정자원과 취업지원 및 교육(직업 교육, 정신교육 등)	1	0.4	0.4
출소자 갱생보호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공이 재범 방지 대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B군의 설문과 D군의 설문은 상호 배치되는 성향의 조사다. 고위험군 범죄자로부터 사회보호와 그와 같은 출소자들의 사회복지, 갱생보호 문제의 조화점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1	0.4	0.4
출소자 갱생보호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대로 출소예정자들에게 출소 후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1	0.4	0.4
출소자 갱생보호와 사회복지를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정책을 펴 나갈것	1	0.4	0.4
출소자들은 사회에 나와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다시 재범의 길로 빠지므로 교정기관이나 보호직 공무원들의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시스템 전환이 필요	1	0.4	0.4
출소자들이 사회복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등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중국의 출소자 사후관리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1	0.4	0.4
출소자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직장이 꼭 필요한데 현재 직장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사회의 편견이 너무 심함	1	0.4	0.4
출소자를 사회내에 방치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1	0.4	0.4
출소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보다는 갱생의욕과 사회복지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 선택과 집중원칙을 적용	1	0.4	0.4
출소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더불어 미취업 출소자를 위한 직업 훈련 및 자체 작업장등을 갱생보호소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1	0.4	0.4
출소자의 갱생의지와 비례한 지원이 필요	1	0.4	0.4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1	0.4	0.4
출소전 수용자 적성에 맞는 직업과 작업의 연계 프로그램 확충 요망함.	1	0.4	0.4
출소후 일정기간 사후지도를 해야한다. 형종료자도 포함해서 사후지도는 감독우선이 아니라 치료 및 보호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0.4	0.4
필요예산의 확보 및 갱생보호에 대한 국민관심 유도	1	0.4	0.4
현재 교도소내에서는 직업훈련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잘되고 있는 듯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성 자체를 분석하고 재사회화 시켜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도소내(치료 내지 처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1	0.4	0.4
현재 보호관찰을 능력과 인원에 비해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든다. 갱생보호, 사회복귀, 재범방지는 자꾸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명령 집행도 덩으로 없었으니, 감당해내야 되겠지만 일선 실무자들은 정말 버겁다. 열의를 가진 교정공무원 중에서 보호관찰을 지원하게 한다면 수월하지 않겠는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1	0.4	0.4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 출소자 갱생보호시설확충과 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 된다면 갱생보호사업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	1	0.4	0.4
형식적인 주거알선이 아닌 재범방지와 출소자가 실질적으로 몸담고 쉴 수 있는 영세민 아파트로 분양하에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1	0.4	0.4
	265	100.0	100.0